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 10. 13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기 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자 : 2011. 09. 30
- 다. 회부일자 : 2011. 10. 04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용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함
(별표1, 비교 제7호 가목)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3조제8호, 별표1, 비교 제7호 ‘나’·‘다’ 목 및 제15호)
- 다. 다자녀 가정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할인율을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막내가 만 13세 이하 발급)’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할인으로 변경함
(별표1, 비교 제17호)
- 라.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함
(별표1, 비교 제20호 및 제21호)
- 마.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2011.8.4)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10호, 2011.4.30) 제8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9.8 ~ 2011.9.28) 결과 : 의견 반영
-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의견 반영
- 3) 조례·규칙심의회(2011.9.29) : 일부 수정
- 4) 서울특별시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의견제출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

<p>조례개정안</p>	<p>■ 별표 1 비고 제20호(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구청장이 기준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나. 공공시설 방문(민원) 차량 다. 공공시설에 공적인 용무로 방문한 차량 라. 공공시설 관리 직원 및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p>■ 별표 1 비고 제21호(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행사 주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사전 승인
<p>의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과 (제20호) 감면시간 명시 “가” 목 : 수강시 마다 수강시간+30분 “나” 목 : 60분 면제 “다” 목 : 면제 “라” 목 : 면제 또는 정기권 할인 (제21호) 내외빈 면제, 그 외 일정 주차면수에 대하여 행사 종료시까지 100분의 80 감액 ○ 감사담당관 (제20호) 부패영향평가 제20호 감면기준에 대한 재량의 구체성 및 객관성 확보 필요
<p>반영여부</p>	<p>■ 별표 1 비고 제20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u>수강 시마다 90분 면제</u>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u>정기권 50% 할인</u> (단, 중복할인 불가) <p>■ 별표 1 비고 제21호(미반영)</p> <p>행사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기능 훼손 및 악용 우려</p>

※ 부대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현황 및 타구 사례

○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소재지	시설현황	주차요금	비 고
염리주차장	염리동 174-3	4층 133면	10분 500원 월정기권: 170,000원	3,4층 생활체육관
망원 1-2 주차장	망원동 403-2	지하3층 150면	10분 200원 월정기권: 50,000원	망원1동주민센터
도화주차장	도화동557 외13필지	지하4층 77면 지상4층	미정	2012.6월 오픈예정 도화동주민센터
창천주차장	노고산동 33-1	지하3층 280면	10분 300원 월정기권: 70,000원	학교복합화시설

○ 타구 사례 : 강남구

- 학교복합화시설인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최초 60분 면제

6.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등 각종 행사 관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추가 할인 등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과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중 제7호 가목에서 종전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구체화 하여 장애인복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 안 제7호 나목 및 다목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 안 제15호에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범위를 확대 반영.
- 안 제17호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주던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로 할인대상과 혜택의 폭을 확대 반영.
- 안 제20호 및 제21호는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등 각종 행사 관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7. 조례안 검토결과

기존 장애인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명확히 하여 부정확한 감면요구를 차단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인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을 추가 확대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 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체육시설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자의 차량에 대한 감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이용시간(50분-70분) 및 운동 후 샤워시설 이용시간을 감안한 90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반영이라 사료되며, 기타 개정되는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조례 제2조(별표1)

현행	개정안
<p><u>별표1 비고</u>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p> <p>1. ~ 6. (생략) 7. (생략) 가. <u>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 등급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u> 나.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u> 다.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u></p> <p>8. ~ 14. (생략) 15.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9조에 따른 <u>재래시장의 활성화</u>를 위하여 <u>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u>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p> <p>16. (생략)</p>	<p><u>별표1 비고</u>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p> <p>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u>장애인자동차표지</u>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p> <p>8. ~ 14. (현행과 같음) 15.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9조에 따른 <u>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u>를 위하여 <u>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u>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염리생활체육관 운영 현황]

■ 생활체육관 시설현황

- 위 치 :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174-3)
- 건 물 : 2011.7.25 준공, 1,866㎡(염리공영주차장 3,4층)
- 주요시설
 - 종합체육관(931㎡) : 배드민턴, 탁구, 배구, 축구, 농구교실
 - 다목적체육실(138㎡) : 요가, 에어로빅, 발레, 댄스 등
 - 기타시설 : 샤워실, 선수 대기실, 휴게공간 등
- 관 략 석 : 201석
- 운영시간 : 06:00~22:00(평일), 09:00~20:00(토,일)
 - ※ 정기휴관일 : 매월 둘째 · 마지막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주차요금 : 10분당 500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세부내역 별첨)

구분	프로그램명	사용료 (월/원)	정원	운영시간	비고
종합체육관	배드민턴 탁구교실 배구교실 축구교실 농구교실	35,000 ~ 50,000	20~30명	프로그램 매 50~70분	
다목적체육실	필라테스 파워요가 에어로빅 댄스로빅 댄스스포츠 힙합클럽댄스 키즈발레 발리댄스	35,000 ~ 50,000	20~30명	프로그램 매 50분	

염리생활체육관 프로그램 편성표

〈종합체육관〉

운영시간	강습종목	정원	강사명	이용금액 (월)	레슨비	이용 대상	이용요일					
							월	화	수	목	금	
계		300										
06:00~07:10	새벽배드민턴	35	고대연	35,000원		일반	○	○	○	○	○	
	새벽배드민턴레슨(A)	8		35,000원	70,000원			○		○		
	새벽배드민턴레슨(B)	8		35,000원	50,000원			○		○	○	
07:30~08:40	아침배드민턴	35		35,000원				○	○	○	○	○
	아침배드민턴레슨(A)	8		35,000원	70,000원				○		○	
	아침배드민턴레슨(B)	8		35,000원	50,000원			○		○	○	
09:00~15:00	염리초등학교 사용											
15:00~15:50	어린이 축구교실A	20	조인행	45,000원		1~4학년	○		○		○	
16:00~16:50	어린이 농구교실A	20	윤예상	45,000원		1~4학년	○		○		○	
15:00~16:20	탁구교실B	20	이운재	40,000원		일반		○		○		
17:00~17:50	어린이 농구교실B	20	최경훈	45,000원		5~6학년	○		○		○	
	어린이 농구교실C	20		40,000원		5~6학년		○		○		
18:00~18:50	어린이 축구교실B	20	조인행	45,000원		5~6학년	○		○		○	
	어린이 축구교실C	20		40,000원		1~4학년		○		○		
19:00~21:30	저녁배드민턴	70	장정만	35,000원		성인	○		○		○	
	저녁배드민턴 레슨A	8		35,000원	70,000원	일반	○		○		○	
	저녁배드민턴 레슨B	8		35,000원	70,000원	일반	○		○		○	
		26		35,000원		일반	○		○		○	
19:00~21:30	배구	20	정원숙	35,000원		일반		○				

※ 레슨정원은 모집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목적체육실〉

운영시간	강습종목	정원	강사명	이용금액 (월)	이용대상	이용요일				
						월	화	수	목	금
계		460								
07:00~07:50	필라테스A	20	박혜진	40,000원	중고/성인	○		○		○
08:00~08:50	필라테스B	20	박혜진	40,000원	성인	○		○		○
09:00~09:50	에어로빅A	30	최원용	50,000원	성인	○	○	○	○	○
10:00~10:50	에어로빅B	30		50,000원	성인	○	○	○	○	○
11:00~11:50	힐링요가A(초보)	20	김현미	40,000원	성인	○		○		○
	힐링요가B	20		35,000원	성인		○		○	
12:00~12:50	필라테스요가C(고급)	20		40,000원	성인	○		○		○
	임산부요가	20		45,000원	성인		○		○	
13:00~13:50	스포츠댄스C	20	박채희	40,000원	성인	○		○		○
14:00~14:50	스포츠댄스D	20		40,000원	성인	○		○		○
		키즈발레A	20	최지연	35,000원	5~6세		○		○
15:00~15:50	라인댄스	20	박혜정	40,000원	초등생	○		○		○
	키즈발레B	20	최지연	35,000원	7~8세		○		○	
16:00~16:50	생활댄스A	20	임현주	40,000원	일반		○		○	
17:00~17:50	생활댄스B	20		40,000원	일반		○		○	
18:00~18:50	힙합댄스	20	박희승	40,000원	중고/성인	○		○		○
	스포츠댄스A	20	정효경	40,000원	중고/성인		○		○	
19:00~20:00	클럽댄스A	20	박희승	40,000원	중고/성인	○		○		○
	스포츠댄스B	20	정효경	40,000원	중고/성인		○		○	
20:00~20:50	토탈댄스로빅A	30	유형미	50,000원	중고/성인	○	○	○	○	○
21:00~21:50	토탈댄스로빅B	30		50,000원	중고/성인	○	○	○	○	○

■ 염리생활체육관 10월분 수강 접수현황

(2011. 9. 30 현재)

구 분	프로그램 명	정원(명)	사용인원(명)	비 고
합 계		760	386	
종합체육관	배드민턴(오전,저녁)	140	73	
	탁 구	20	16	
	배 구	20	21	
	어린이 축구 C	20	11	
	어린이 농구(B,C)	40	34	
다목적 체육실	필라테스(A,B)	40	39	
	요가(A,B,C)	70	63	
	에어로빅(A,B)	60	31	
	댄스로빅(A,B)	60	45	
	댄스스포츠(A,B)	40	24	
	댄스스포츠(C,D)	40	7	
	방송힙합댄스	20	2	
	클럽댄스	20	10	
	키즈발레 B	20	9	
	어린이 축구 A,B	30	0	폐강
	어린이 농구 A	20	0	
	방송힙합댄스	20	0	
	키즈발레 A	20	0	
	요가 D	20	0	
	키즈밸리댄스	20	0	
	키즈방송댄스	20	1	